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차례



등장인물 소개	04
제1장 저작권 도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모였다!	06
제2장 수련의 시작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7
제3장 한 단계 UP – 어떤 저작물이 보호되는가?	28
제4장 저작권 보호, 나에게도 좋은 일	36
제5장 우리 교실 속으로 들어온 저작권	48
제6장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인 저작권 침해 ①	59
제7 장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인 저작권 침해 ②	70
제8 장 내 저작권을 보호하는 강력 마법을 배우자	81
제9 장 위풍당당한 하산(下山)을 위한 저작권 마법 테스트	90
•문제 풀이	97
•정리 마당 – 정답 및 설명	99

등장 인물 소개

박리

불법 복제 게임 ID를 친구들에게 싸게 판매하다 적발됨.

장폭우

허락도 없이 다른 친구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발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도장에 들어옴.

사범

저작권 도장의 사범으로 장폭우, 박리, 나보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수련시켜 저작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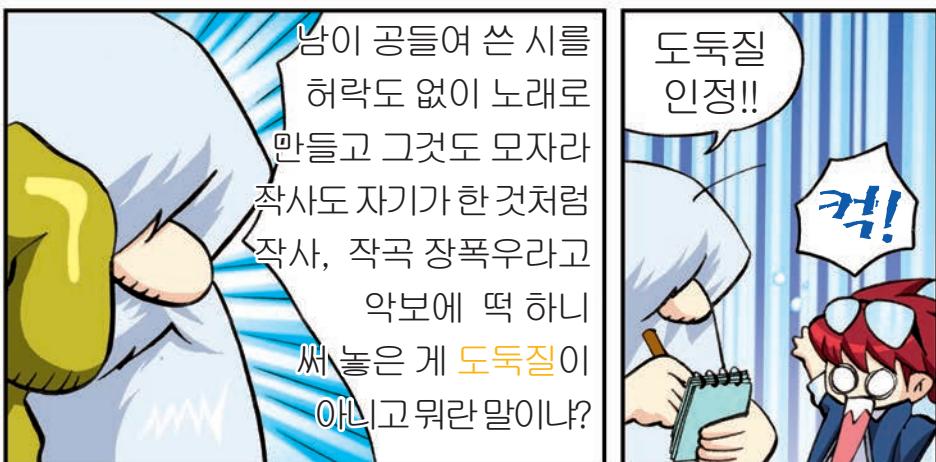
나보아

자기 블로그에 온갖 콘텐츠를 모아 들이는 일을 낙으로 살다가 저작권 도장에 들어옴.

제1장

저작권 도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모였다!









제1장

저작권 도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모였다!

저작권 도장 체험을 시작해요.

장폭우, 박리, 나보아. 이 친구들이 모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모두 자기들은 결백하고,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재능을 질투한 사람들의 음모라고 생각하네요.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저작권 도장에서 저작권 수련을 받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 저작권은 무엇이고, 이들 세 친구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친구들도 저작권 도장 체험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나요? 네? 아뇨, 아뇨. 도복이나 침낭, 비상식량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세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하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장폭우와 박리, 그리고 나보아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여러분도 학교나 집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없나요?



장폭우의 생각은 아래요. ‘뭐가 문제란 말이야? 그 시를 쓴 사람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고를 가졌어. 나의 예술적 재능을 총동원해서 그 시를 더욱 빛나게 해 주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냐? 일단 시를 써서 발표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시를 널리 읽고 즐길수록 좋은 거잖아. 그런데 자기 시가 널리 불릴 수 있도록 멋진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들어 준 나를 왜 원망하지? 게다가 그 시는 노랫말로는 적합하지도 않았어. 내가 노래로 쓸 수 있도록



제1장

멋지게 고쳐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작사, 작곡 장폭우라고 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그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쓴 시인데, 그것을 왜 내 허락도 없이 노래로 만들어 부르난 말이지. 게다가 폭우는 내 시로 노래를 만들어 놓고는 작사도 자기가 한 것처럼 작사, 작곡 장폭우라고 악보에 떡 하니 써 놓았더라고.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불법 복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아요.



박리는 컴퓨터 도사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지요. 여러분은 박리 같은 친구들이 정말 부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자신은 부모님 눈치를 보며 용돈을 모아 어렵사리 게임 CD를 사는데, 이 친구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멋진 새 게임을 손에 넣으니 말예요. 박리는 자기 혼자만 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D로 구워서 여러 친구에게 나누어 주기도 해요. 물론,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친구가 좋아라 하며 그 CD를 사지요.

박리는 이름 그대로 ‘박리다매(薄利多賣, 상품의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팔아 이윤을 올리는 일)’를 ‘사업’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CD 값에 약간의 ‘수고비’만 붙여서 팔고 있으니 친구들로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박리는 그래서 자기 ‘사업’이 일종의 사회 복지이고 부의 재분배라는 거창한 생각까지 한다네요. 정품을 돈 내고 살 수 없는 가난한 친구들을 돋는 일이고, 주머니가 가벼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복제 CD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 원칙에도 맞는 일이라고 말해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혹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돈 들여 사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이고 노력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은 바로 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도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각

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화, 노래 등도 마찬가지이지요.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은 아니에요.



나보아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자기 블로그를 가지고 있나요? 내 블로그에 좋은 콘텐츠가 많이 있어서 그 콘텐츠를 보려고 많은 친구가 방문한다면 정말 좋겠지요. 나보아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자기 블로그를 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블로그를 채우는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들여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에 올릴 때의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와서 좀 봐 주세요.’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하찮게 여긴다면 곤란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가져다가 자기 것인 양 사용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 도장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하는 마음이네요. 좀 오래된 노래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작권 도장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해요. 체험 첫날을 맞는 오늘 하루, 정말 피곤하지요? 푹 쉬고, 내일 봐요.

“여러분~ 내 꿈 꿰요!!!” (으악, 악몽이라고요? 몰라 몰라, 아잉~!)

장리 마당

QUIZ

* 다음 글자판을 잘 보고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 가운데 저작권과 관련된 것을 찾아 보세요.



타	누	리	불	집	온	세	상	예	스
저	작	권	법	청	소	년	만	세	캔
작	무	단	복	제	군	시	장	상	만
물	공	부	제	2	표	호	환	구	화
지	주	적	권	처	차	마	마	경	장
마	필	상	출	관	없	적	어	재	폭
아	할	전	송	권	공	성	저	미	우
우	피	가	바	궐	미	안	수	작	응
랑	는	를	드	홍	사	심	지	직	물
저	작	권	침	해	동	그	라	미	랑

<정답은 99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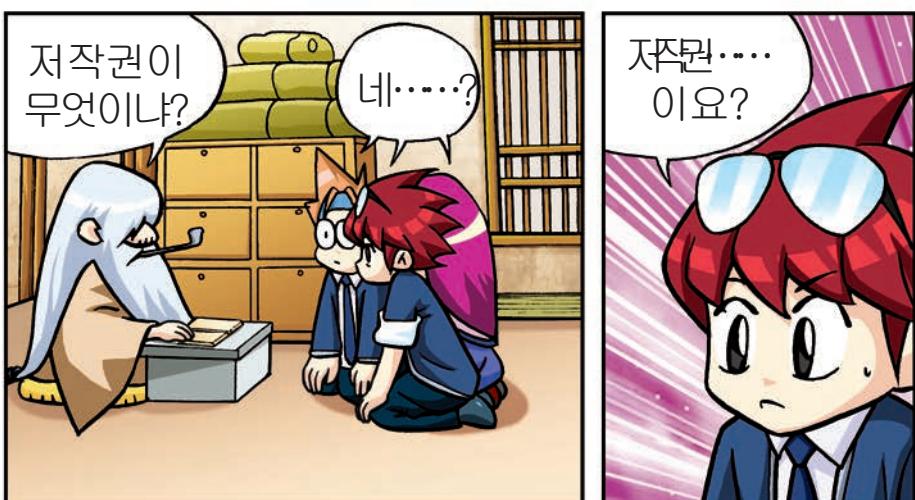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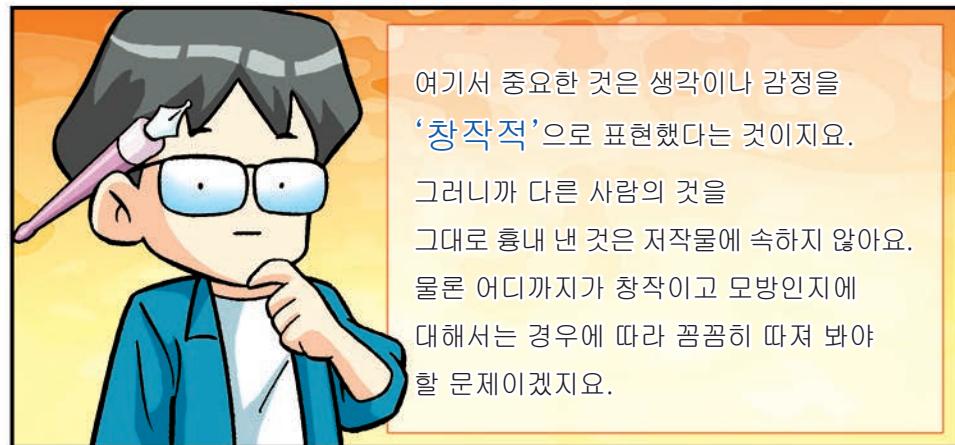


수련의 시작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제2장 수련의 시작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세 친구들이 본격적인 저작권 수련에 돌입했군요. 우리도 이 친구들의 모험을 따라가야겠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것 본 적 있나요?

© 흥길동 2006
All Rights Reserved

이 CD-ROM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 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중학교 1학년 생활국어 교과서 -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들려오네요. 네, 많이 보았지요? 우리가 서점에서 사 읽는 책을 보아도, 대여점에서 빌려 온 비디오테이프나 DVD를 틀어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문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문구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요?

다시 한 번 위의 문구를 볼까요? 여기에는 저작권, 저작물, 저작재산권자와 같은 말들이 나오네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요. 하지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건물이 안전하듯이 저작권 수련도 그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 가야겠지요. 우선 저작권과 저작물을 앞에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지요.



제2장

저작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저작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란 이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우리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콘텐츠가 나오면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소설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거나, 시를 노래로 만들거나(장폭우의 경우지요?), 게임을 영화로 만들거나(맞아요, ‘툼레이더’!), 애니메이션을 게임으로 만드는 등, 수도 없이 많지요. 특히 요즘은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¹⁾라고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문화 산업의 중요한 추세이기도 하답니다.

1) 하나의 소재를 서로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급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전략을 말해요. 이 방법은 하나의 인기 소재만 있으면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 높은 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지요.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에서 자기 회사의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미키 마우스’를 캐릭터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스타워즈’를 게임과 캐릭터로 개발한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지요. 또 있나요? 많아요. 찾아보세요.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항상 같은 사람인가요?

저작권자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겠지요.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과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선 저작물과 ‘인격’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래요.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이 들어 있는 작품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쓰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 해야 하고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작재산권은 어떨까요? 재산은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요.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양도나 상속이 일어나면 저작권자는 처음의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 저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

니까 폭우가 만든 노래의 저작권을 보아에게 양도하면 저작권은 보아가 갖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래를 폭우가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²⁾ 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저작재산권만을 넘긴 것이지 저작인격권이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더욱 존중해 주어야 하겠지요?

이제 기초 수련이 끝났어요. 겨우 몇 가지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이제 기초를 튼튼히 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요!

2) 폭우가 보아에게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도 폭우는 저작인격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보아가 넘겨 받는 것은 정확히는 저작재산권인 것 이지요. 이제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의 말뜻을 알겠지요?

정리 마당

QUIZ

* 다음 설명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가요? <보기>에서 알맞은 답을 찾아서 적어 보세요.



보기

저작물,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권자, 2차적 저작물

1. ()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2. ()

사람들이 가진 생각(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정답은 99쪽에>

제3장

한 단계 UP –

어떤 저작물이 보호되는가?



에이, 그럼 저기 걸린 태극기도 저작물인데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제3장 한단계UP – 어떤 저작물이 보호되는가?

보호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 Quiz

• 맞으면 ○, 틀리면 X으로 표시하세요.

-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등은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
- 2 신문 기사나 보도 사진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 3 노래방에서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저작권료를 지급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
- 4 기존에 출제된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수집하여 학원생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강의 시간에 풀어 주었다면 저작권 침해이다. ()
- 5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국내외 유명한 시들을 모아 점자책을 만들고 이를 유료로 판매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6 발표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 도서관에서 열람하였다. 필요한 부분만 도서관에 복사를 요청하였고, 도서관에서는 책의 일부를 복사하여 한 부만 제공하였다. 도서관의 이러한 복사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7 얼마 전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시 한 편을 작가의 사전 허락 없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게재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8 학교 축제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연극 동아리의 학생들이 얼마 전 극단에서 공연되었던 유명한 연극 작품을 공연하였다. 입장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어떤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연극 동아리 학생들의 연극 공연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 9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X)

<정답은 97쪽에>



제3장

어떤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은 창작 의욕을 북돋고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저작물 이용 금지나 제한으로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저작권법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걸을 때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하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저작권법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저작권법은 창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돋기 위한 것이에요.

저작권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 저작물로 보호받고, 어떤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작권 도장의 사범님과 함께 풀어 본 ○X퀴즈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제3장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법으로 보호될까요?

보호받는 저작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의 기준

1.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3. 우리나라에 늘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

아! 하고 느낌이 오나요? 그래요. 거의 모든 창작물이 이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설가가 쓴 소설은 본인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법이 그 저작권을 보호해 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만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우리나라와 거리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거나, 사이가 좋지 않고 왕래가 활발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나라와 친하는 그럴지 않은 저작권 조약에 함께 가입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사람의 저작물을 당연히 법으로 보호하겠지요?

어떤 경우에 저작물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는 뜻이겠지요? 즉 어떤 저작물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저작물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저작권법 제8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함부로 가져다 쓰면 곤란하다.’라고 말이에요.

저작권 보호가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를 보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제나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복제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은 저작권 보호가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 보호하기는 하는데 이용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그 경우에 한해서만 마음대로 쓸 것이 허락되는 경우이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작권법의 목적이 무조건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돋기 위한 것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저작권 보호를 예외적으로 제한해서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저작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QUIZ

정리 마당



* 다음 글을 읽고 맞는 문장에는 □ 표, 틀린 문장에는 × 표 하세요.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 1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3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 4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10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1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1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
- 2 한 국가 안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은 해당 국가 국민의 저작물뿐이다. ()
- 3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의 이용을 무조건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돋기 위한 것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한된다. ()



<정답은 99쪽에>

저작권 보호, 나에게도 좋은 일









제4장 저작권 보호, 나에게도 좋은 일

장래 희망을 알아보자.

우리 친구들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나요? 2006년도에 광주 하남 교육청에서 조사³⁾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통틀어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장래 직업은 교사였다고 해요. 초등 6학년생은 전체 1,209명 중 184명(15.21%)이 장래 희망으로 교사를 희망했고, 중등 3학년생은 1,105명 중 85명(7.69%)이 장래 희망으로 교사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등 6학년생은 ▷ 의사(133명, 11%) ▷ 디자이너(91명, 7.52%) ▷ 법조인(85명, 7.03%) ▷ 연예인(70명, 5.79%) 순으로 장래 희망을 밝혔다고 해요. 모델을 희망하는 학생을 연예인에 포함시키면 연예인 희망자도 7.03%(85명)나 되더라고요. 중등 3학년생은 ▷ 회사원(57명, 5.16%) ▷ 디자이너(36명, 3.26%) ▷ 연예인(33명, 2.99%)의 순이었다는데,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도 이 가운데에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친구와는 다른, 특특 뛰는 직업을 원하나요?

3) 「초등 때 가졌던 꿈, 중등 되면 잊어 버려」, e-시티뉴스, 김영수기자, 2007.04.01, <http://www.ctnews.co.kr>, 2007.08.20. 검색.

직업	초등 6학년 (%)	중등 3학년 (%)
교사	15.21%	7.69%
의사	11%	5.16%
디자이너	7.52%	3.26%
법조인	7.03%	2.99%
연예인	5.79%	-
회사원	-	5.16%
그 외	53.45%	80.90%



제4장

선생님과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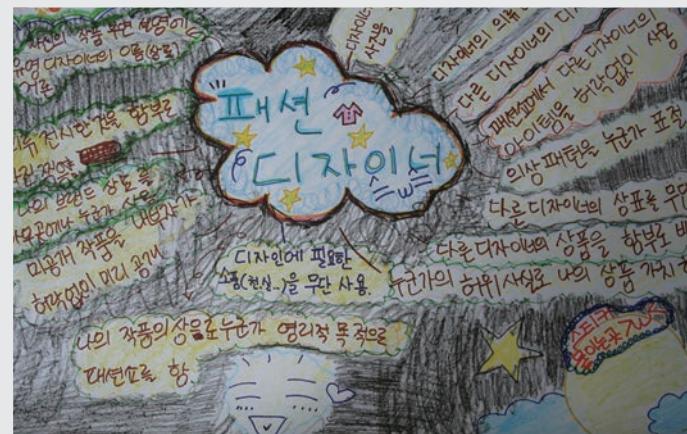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든지 저작권이라는 문제와 무관한 직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친구가 희망하고 있는 직업인 교사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게 수업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활용합니다. DVD를 이용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여 주기도 하고, 좋은 시가 있으면 인쇄물로 만들어 나누어 주고 함께 읽어 보기도 합니다. 연극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면, 축제에서 공연할 연극의 대본을 만들기도 하지요. 이 모든 자료를 모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사용하는 교과서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고는 해도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들 스스로 저작물의 창작자가 되기도 하지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수업을 위한 학습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활동부터, 친구들에게 보여 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 저작권과 깊은 관계가 있지요.

얼핏 생각하면 저작권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을 하는 선생님들도 이처럼 업무 곳곳에서 저작권과 깊이 관계되어 있으니, 디자이너, 소설가, 극작가, 화가와 같이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직업에서 저작권이 갖는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만 아픈 소리이겠지요.

우리의 희망 직업과 저작권

다음 그림은 우리 친구들 중 한명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 저작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를 상상해서 그린 것이에요.



바로 나를 위한 일!!

살짝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공짜로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골치 아프게 저작권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온 사회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창작자들이 힘내어 일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살아 가고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친구들 스스로 저작물의 창작자가 되어서 살아갈테니까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일을 나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는 중요한 문제예요. 저작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발전된 문화를 누리기가 어렵겠지요.

더 알아보는 저작권 이야기 –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국-인도”⁴⁾

최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비밀을 아세요?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에 따르면 인도가 중국을 누르고 아시아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힘이라고 하네요.

인도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같은 국제적 압력 때문에 1990년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을 대폭 개정했어요. 이 법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또 특히 관련 법률도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개정을 했어요. 이 모두가 인도인이나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IT 산업 등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어요.

인도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나 브라질과 비교하면 아주 두드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이나 브라질은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더딘 편이거든요.

정리 마당

* 다음 글을 읽고 맞는 문장에는 ○표, 틀린 문장에는 ×표 하세요.



<정답은 99쪽에>

1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은 작곡가, 소설가 등 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극히 제한된 영역뿐이다. ()

2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저작물 이용자가 될 수 있다. ()

3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책임이 따른다. ()

〈덧붙여 읽을거리〉

5)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서울문화사
불법스캔만화 추방 캠페인,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불법스캔만화신고센터, (주)서울문화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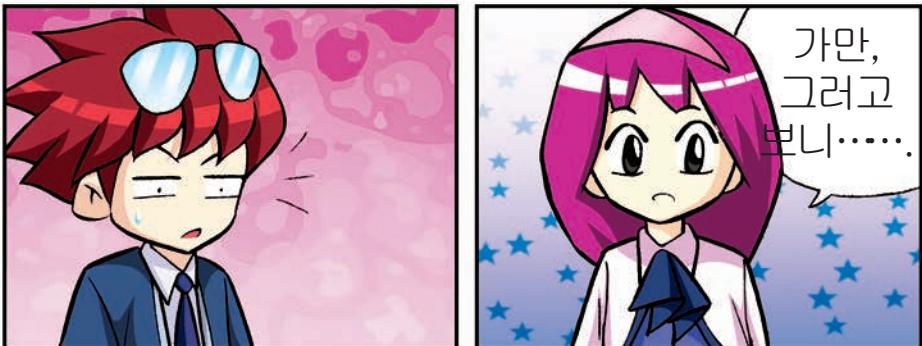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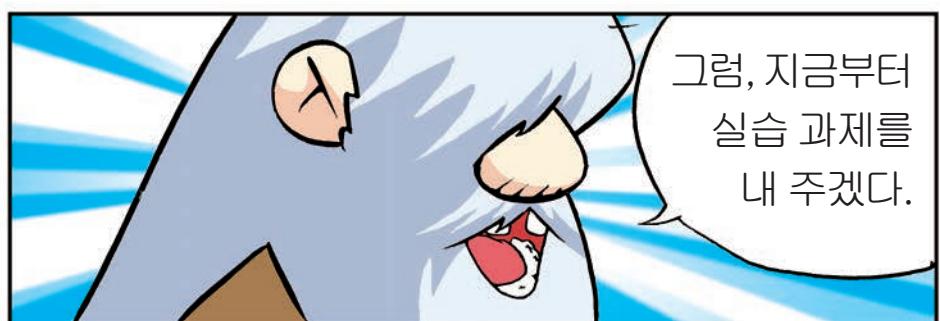
4) 「印 부상, 비밀병기는 ‘지적재산권보호’」, 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 2006.5.8, <http://www.mONEYtoday.co.kr>, 2007.7.29. 검색.

QUIZ



우리 교실 속으로 들어온 저작권









제5장 우리 교실 속으로 들어온 저작권

저작권 삼총사의 실습을 따라가 보니

저작권 삼총사의 흥미진진한 학교 실습을 잘 보셨나요? 처음에 사범님이 교실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것을 세 가지씩 찾아내라고 하셨을 때에는 정말 당황했지요? 여러분도 ‘우리 교실에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 래?’ 하는 생각을 하며 세 친구들의 불평과 항의에 100퍼센트 공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 친구의 실습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교실 안에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우리의 하루와 저작권

우리의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 한시도 저작권과 관련되지 않은 순간이 없을 만큼 저작권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답니다.

<어느 친구의 하루>

- 아침 6시 기상.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들으며 등교 준비를 한다.(음악저작물)
- 아침 7시 30분. 학교에 가기 위해 전철을 탄다. 오늘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소설 ‘남한산성’을 꺼내서 읽는다.(어문저작물)
- 오전 8시 학교 도착. 교실에 도착해서 내 자리에 앉았다. 내 자리 바로 옆에는 우리나라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모아서 만든 달력이 걸려 있다. 나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둑은 달력을 떼어 내는 일을 좋아한다. 이번 달에는 천경자의 그림이다.(미술저작물)



제5장

2교시 사회 시간. 기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하면서 선생님께서 세계 각국의 전통 주택 사진을 보여 주셨다. 가슴이 뛴다. 나는 한비야처럼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다. 언젠가 저 사진 속에서 본 나라들을 모두 가 볼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글과 사진으로 엮어서 책을 내는 여행 작가가 되어야지.([사진저작물](#))

6교시 영어 시간. 수행 평가로 간단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앞에서 발표한 모둠은 컴퓨터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다. 와,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 우리도 긴장해야 하는 것 아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둠이 발표인데…….([어문저작물](#))

오후 4시 논술 특기 적성 시간. 선생님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여 주셨다.([영상저작물](#))

저녁 7시. 오늘은 친구와 연극 구경을 가기로 한 날. 그 친구의 이모가 극단에서 일하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 있었다. 연극은 정말 재미있었다. 게다가 주연 배우는 왜 이리 멋진 거야! 어쩌면 좋아.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연극저작물](#))

그러니 사범님이 세 친구의 실습 장소로 학교를 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을 실습 장소로 택했더라도 저작권 삼총사가 임무를 완수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장소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이나, 넓은 바다였다면 곤란했겠지만, 우리 사범님이 그렇게까지 대책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등과 같은 말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보세요!

말과 글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문저작물

음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그것이 악기에 의한 것이든 사람에 의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음악저작물

사진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청사진과 같이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사진저작물

건축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등도 포함된다.

건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도형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린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색채 또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작품이 해당된다.

미술저작물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음성 포함 여부에 관계 없으며 비디오 게임의 화면도 해당된다.

영상저작물

장리 마당

QUIZ

* 다음은 어느 중학교 교실 안에서 찾은 물건들입니다.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 표를 해보세요. 누가 누가 더 많이 찾나 친구들과 시합을 해보면 재미있겠지요?



<정답은 99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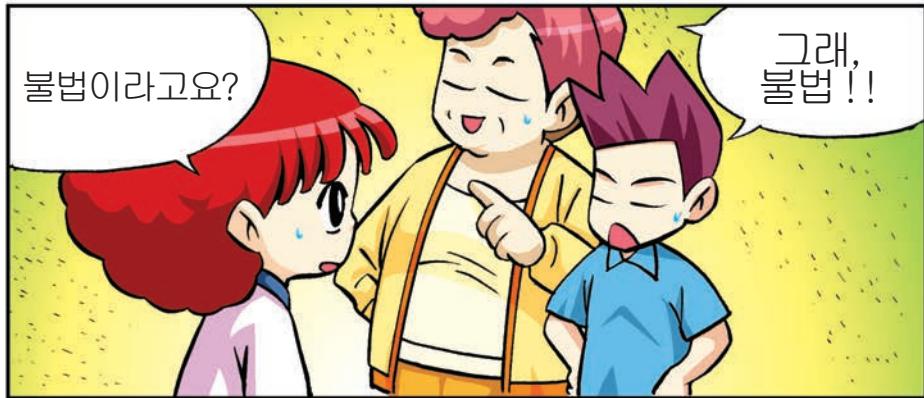
제6장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인 저작권 침해 ①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처럼 우리가 항상 겪는 일.







지민아, 집이나 자동차, 신발, 옷과 같은 물건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지? 마찬가지로 글에도 주인이 있고 저작권이 있는 거야. 너는 오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빠의 글을 이용했으니 오빠의 권리를 침해한 거지.





제6장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인 저작권 침해 ①



제6장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글을 베낀 적 있나요?

여러분도 지민이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사실 학교 숙제를 하다 보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주욱 긁어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지민이처럼 오빠가 해 놓은 숙제를 미리 입수하는 행운(?)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에 따라 과제를 컴퓨터로 작성하지 말고 손으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학생들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적을 속이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제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짜내는 계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는 저작물의 주인이 지민이의 오빠이니까 야단맞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사실 이보다 심각한 경우도 많이 생긴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베끼면



'여우와 송사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과거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줄거리 전개 과정, 등장인물 관계도 비슷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서 나오는 대사도 똑같았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이 뭐길래'의 작가는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결국 2006년 3월, 법원은 '방송사 등은 원고('사랑이 뭐길래'의 작가)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베끼는 일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명예가 떨어지는 손실까지 겪게 되었지요.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물론 친구들 중에는 겨우 학교에 제출하는 과제 하나를 가지고 '너무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규모가 크건 작건, 정도가 심하건 약하건, 중요한 것은 베끼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지민이를 위한다면 지민이가 앞으로 삶에서 부딪힐 유사한 상황에서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정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요. 최근에 교수나 장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에 발표했던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힘들게 오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만큼 표절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지민이의 오빠나 엄마처럼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표절 문제

요즘은 표절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유명 가수의 노래가 외국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을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노래뿐만 아니라 광고나 드라마, 쇼프로그램 등의 형식과 구성 등도 표절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서로 잘 모르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와 같은 베끼기가 그냥 넘어갈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오늘날, '다른 나라의 것이니 모르겠지' 하고 표절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답니다.



장리 마당

QUIZ



정직한 선택이 진정 나를 위한 선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몇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모르는 표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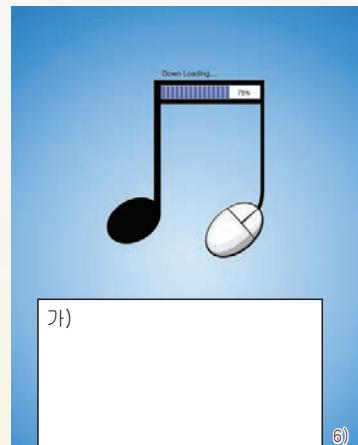
때때로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바로 옆에서 내 것을 베껴 과제물을 제출한 친구가, 몇 날 며칠을 밤새 끙끙대며 과제물을 제출한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화가 나오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지요. 내가 공들여서 쓴 시를 제치고, 누군가의 것을 살짝 베껴서 쓴 친구의 시가 백일장에서 상을 탈 때, 갑자기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나도 좀 더 약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표절로 좋은 점수를 얻은 친구는 당장 1~2점을 더 받고, 상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직한 노력으로 쌓은 실력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유혹을 이기고 정직한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 수 있지요. 이 실력과 자부심이, 어른이 되어 더 큰 유혹이 닥쳤을 때에도 그것을 물리치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뜻밖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줄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정직한 선택을 하기! 우리 친구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에요. 크게 세상을 보면 정직한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랍니다.

※ 다음 포스터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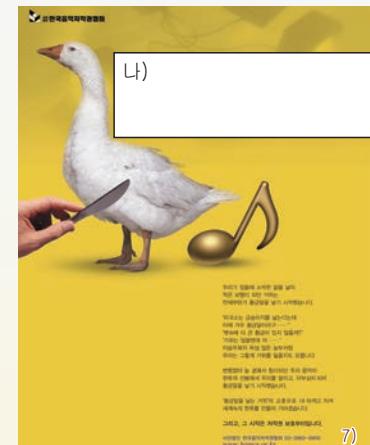
여러분들이 포스터에 잘 어울리는 표어를 만들어 넣어 보세요.

<정답은 99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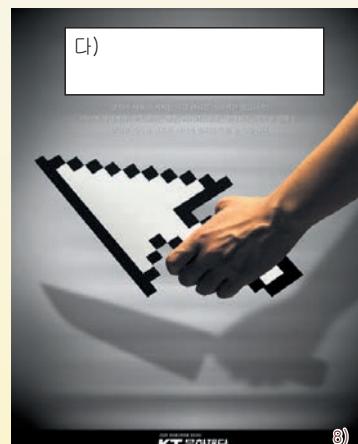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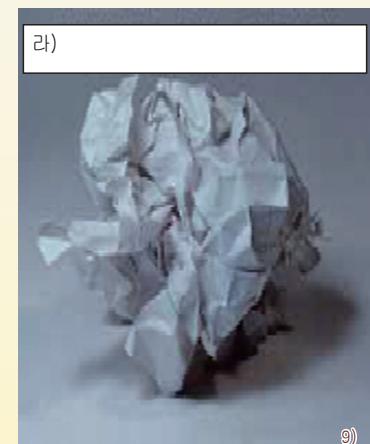
6)



L



KT 문화재단



라

6) 학령권 저작권 침해!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KTF온라인재단(www.ktcf.or.kr) 제1회 공인포스터 공모전(2005년)

7) 송영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포스터
곡명단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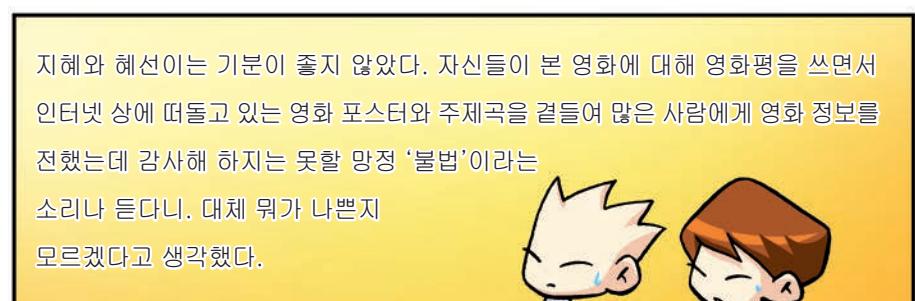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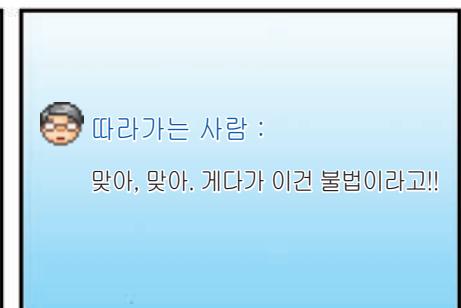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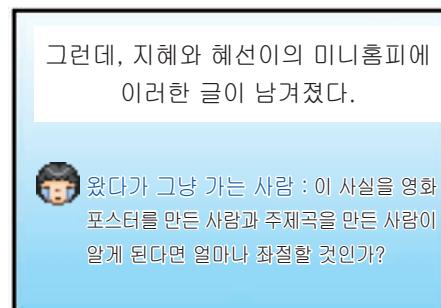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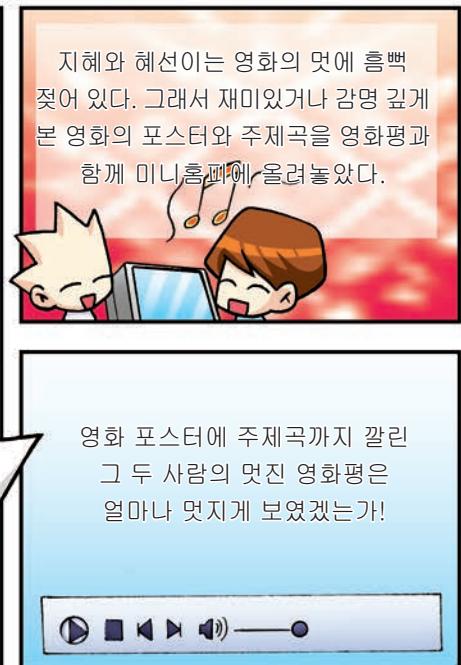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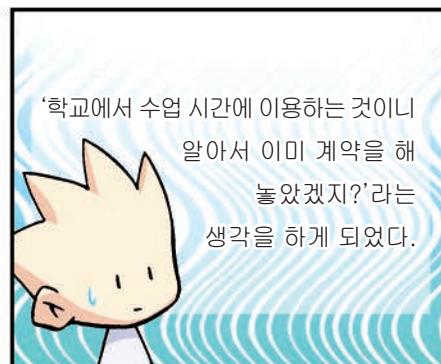
8) 윤성현, 양성진, 단시드, KT문학재단(www.ktcf.or.kr), 제1회 공인포스터 공모전(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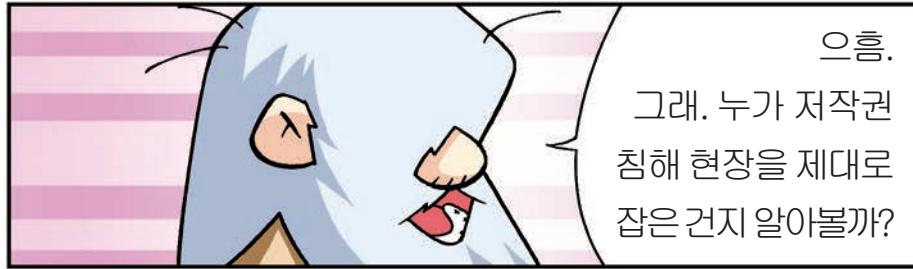
9) 「저작권 침해 약식을 구기는 행위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www.copyright.or.kr)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인 저작권 침해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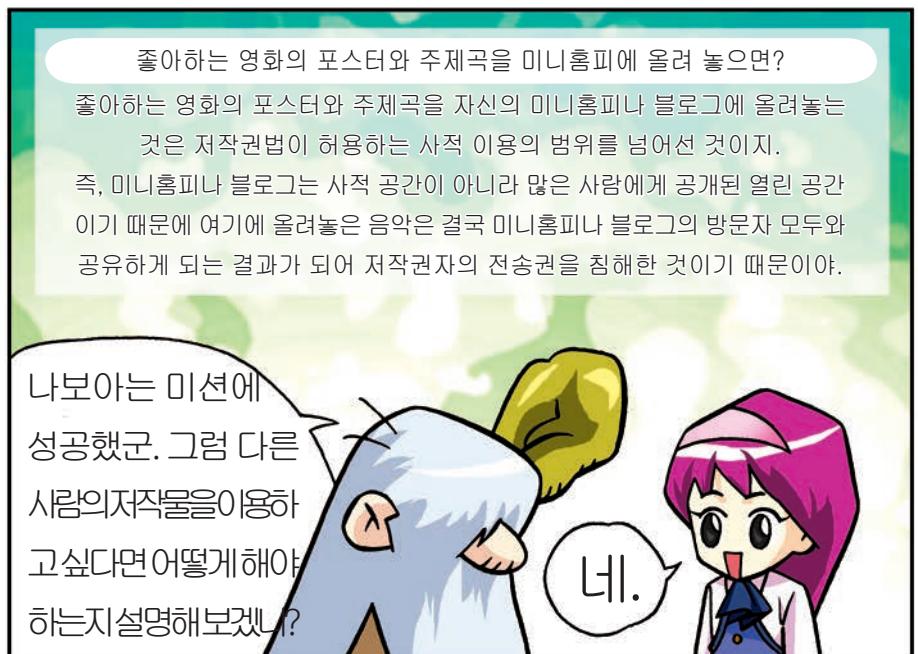






태훈이가 형주에게 선물한 CD는 불법인가요?

태훈이는 매우 사적인 경로로, 그리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단 한 부만을 복제하여 형주에게 선물했다는 거지?
물론 게임의 복제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속하니까 태훈이가 한 일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태훈이처럼 친한 친구에게 CD를 구워 선물한 것은 아주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태훈이가 형주에게 CD를 선물한 것이 불법은 아니란 말이지.
하지만 만약 태훈이가 전교생에게 CD를 복사해서 돌렸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지. 이것은 개인적인 이용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니 당연히 문제가 되지.





제7장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인 저작권 침해 ②

세 친구가 과제를 해결했는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저작권 삼총사 중에서 누가 임무에 성공했나요? 그렇죠. 바로 나보아만 성공을 했네요. 자세한 설명은 사범님이 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장폭우가 찾아온 사례를 생각해 볼까요? 태훈이가 형주에게 선물한 게임 CD는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았죠. 태훈이는 형주에게 도둑질한 물건을 선물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혹은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선물하려고 복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저작권 삼총사 중 하나인 박리가 왜 저작권 도장에서 수련을 받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박리는 돈을 벌기 위해 게임 CD를 대량으로 복제해서 친구들에게 팔았지요?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원칙으로 싸게 팔았고, 별로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항의해도 소용없답니다.

이번에는 박리가 찾아온 사례를 살펴볼까요? 학교 음악 시간에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 음악을 들었을 경우에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시죠? 노래를 방송에 내보낼 때에도, 노래방에서 틀 때에도 그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의 목적으로 틀어 주는 음악은 어떨까요? 사범님의 말씀대로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을 틀어 주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나보아는 자기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서, 지혜와 혜선이가 미니홈피에 감명 깊게 보았거나 재미있었던 영화의 포스터와 주제곡을 올려놓은 현장을 잡았군요. 지혜와 혜선이가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좋아하는 영화의 포스터와 주제곡을 올려놓은 것은 불법인가요? 그렇죠.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포스터나 영상, 또는 주제곡 등을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이지 다른 나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랍니다. 개인의 미니홈피라도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한 걸음 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제7장

먼저 이메일을 보내세요.

정중하게 이용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으면 돼요.

1.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편지에 꼭 써야 할 내용

누가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인지 단체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어디서 :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찾은 자료가 어떤 홈페이지 또는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무엇인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장의 사진이 있을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사진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겠지요.

어떻게 : 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올릴 것인지, 숙제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연락 받을 연락처 : 이용 허락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작성한 예시 자료

숙제에 활용하기 위해

받는이 : _____@_____ .net

제목 : 000님의 자료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용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_____ 학교에 다니는 _____입니다.

_____를 읽으면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숙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아도 될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제 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장

한 걸음 더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신문 기사에 활용하기 위해

- 받는이 : _____@_____ .net
- 제목 : 학교신문 기사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 내용 :
 - 저는 학교 신문반에서 활동하는 _____ 학생 기자입니다. _____부분을 인용하여 학교 신문 기사로 내고 싶습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 _____을 참고로 제2의 창작물을 만들어 새로운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활용 허락 여부를 알려 주시면 저희 학교 신문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메일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_____

3. 다른 사람의 자료를 허락 받은 후 사용할 때, 해야 할 일

- 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꼭 밝혀야 합니다.
(만약 원작자를 모르면 저자 미상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 ② 자료를 제공받은 곳(홈페이지나 책자)을 꼭 밝혀야 합니다.
- ③ 자료를 제공받은 시점을 꼭 기록해야 합니다.
- ④ 다른 사람이 자료를 사용할 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만들어 줍니다.(주로 홈페이지의 경우)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저작권자의 허락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알아보는 저작권 이야기

무심코 영화 올렸다가 고소당한 네티즌¹⁰⁾

대학생 황모씨(25)는 지난 2006년 6월 말 경찰서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황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몇 달 전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가입한 뒤 올린 영화가 문제가 되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뒤 황씨는 영화사로부터 “합의금 80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황씨는 “반성하고 있으니 합의금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2006년 3~4월 중 검찰에 들어온 고소 사건은 모두 453건. 검찰은 현재까지 238건을 네티즌 주소 관할 지방 검찰청으로 이송했고 136건에 대해서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79건의 고소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맡도록 했다.



10) 「무심코 영화 올렸다가 ‘아이쿠!’」, 한국경제신문, 김현예기자, 2006.7.31, <http://www.hankyung.com>, 2007.8.31.검색.

* 다음 글을 읽고 맞는 문장에는 ○표, 틀린 문장에는 ×표 하세요.



- 1 음반 가게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확성기를 통하여 음악을 들려 주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

- 2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누리꾼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다. ()

- 3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4 A 가수의 팬클럽 회원이 팬클럽 웹사이트에 그의 노래 가사를 올리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

- 5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 6 정품 영화 DVD를 돌려 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



<정답은 99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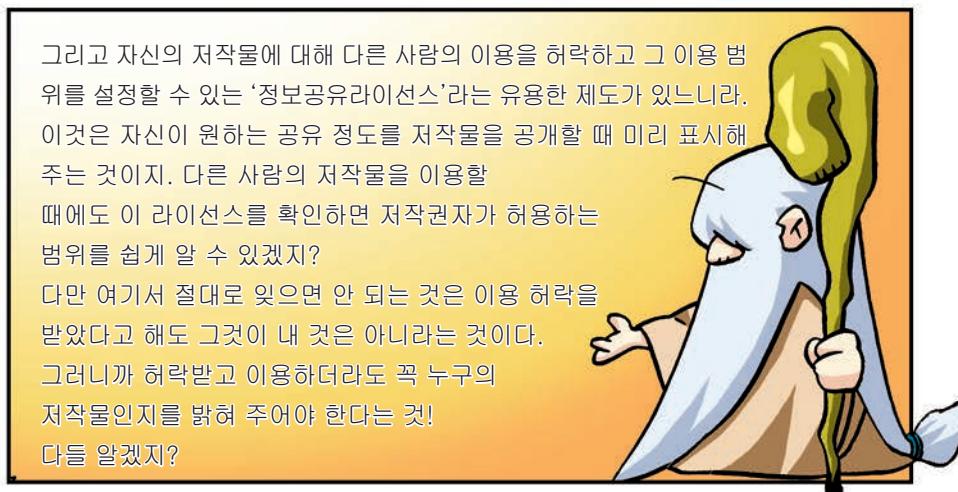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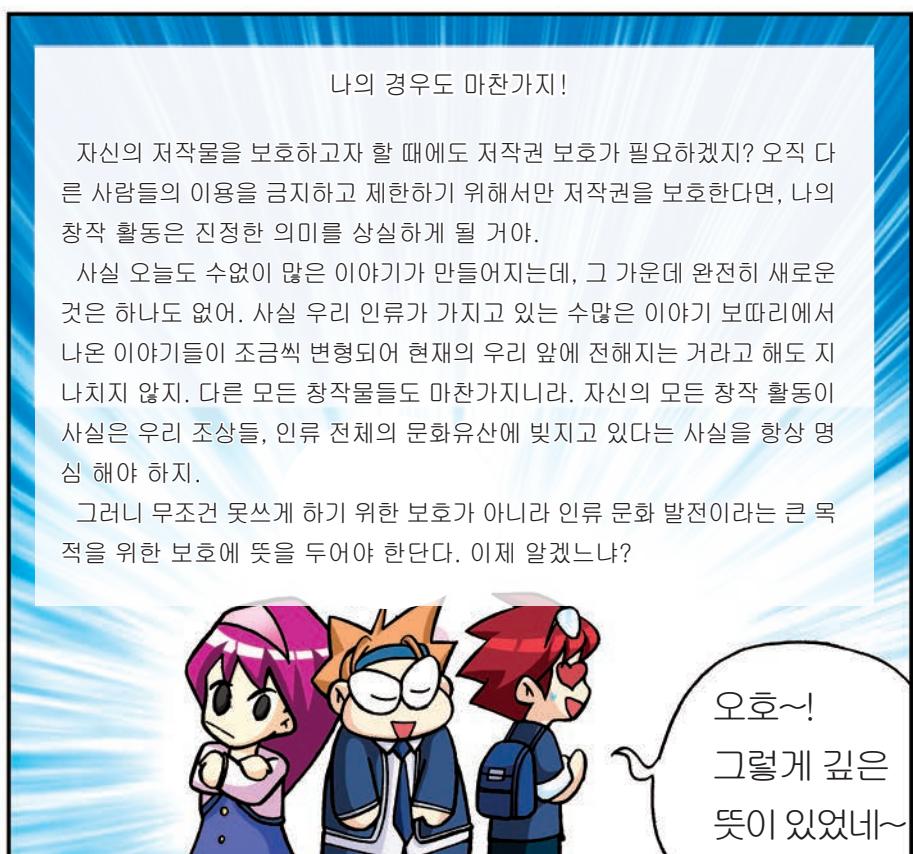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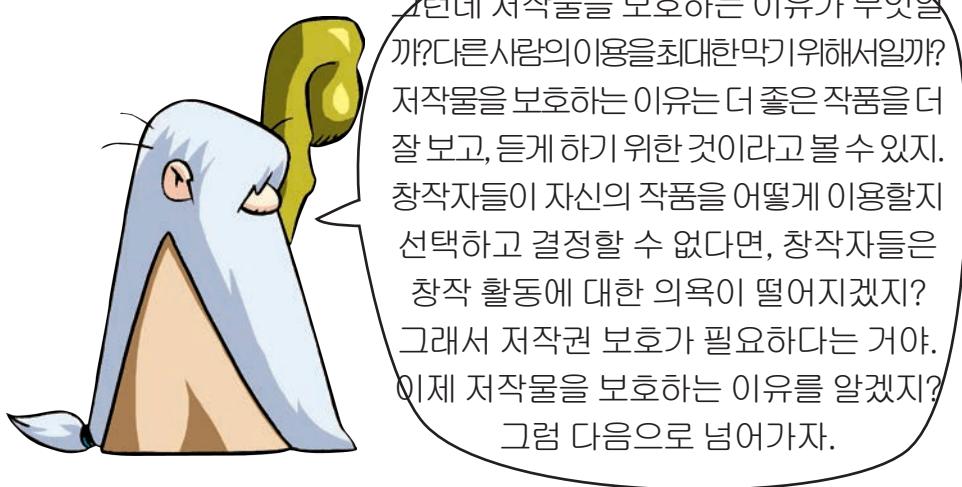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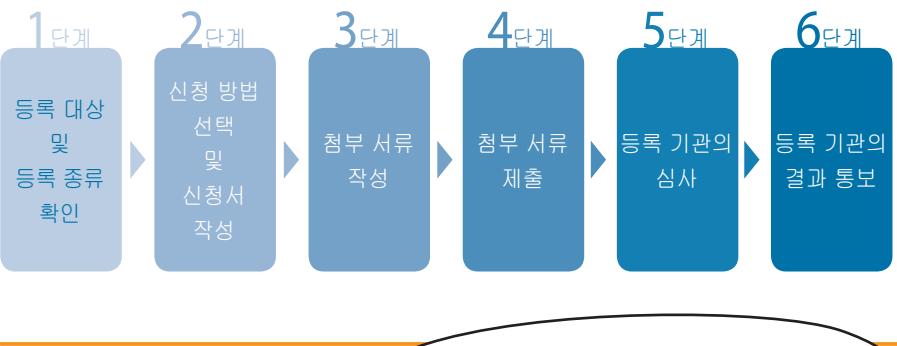
내 저작권을 보호하는 강력 마법을 배우자







● 저작권 등록 절





제8장 내 저작권을 보호하는 강력 마법을 배우자



제8장

저작권, 왜 보호해야 하나요?

저작권 삼총사와 함께 저작권 보호 강력 마법을 잘 배웠나요? 자기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한답니다. 권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의 포스터를 같이 볼까요?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¹¹⁾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품질의 작품을 더 잘 보고,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혼자 보고 듣기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쁨 아니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누가 창작품을 만들고 싶겠어요. 자기 작품이 도둑질당하는 서려움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은 창작자 모두의 꿈이겠지요? 바로 그래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나의 창작물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나 조상들의 유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 게임과 영화로 만들어진 ‘툼 레이더’를 기억하나요? 이 작품은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

11) 박병태,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www.komca.or.kr>), 제1회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

적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즉 힌두 문화와 앙코르 유적지가 없었다면 이 작품은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이 세상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영화 ‘툼 레이더’의
배경이 된 ‘띠 프롬’,
(사진 촬영 및 제공: 박현희)

정보공유라이선스¹²⁾를 이용하려면

사범님의 설명을 통해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미리 정해서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자유 이용 허가서이지요. 이는 정보공유연대(IPLeft)가 지적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 나눔의 문화를 넓히기 위해 2002년부터 해 온 정보 공유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참, 한 가지 더! 이용자들은 표시된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까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이용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 허가를 미리 받은 것이지, 저작권까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표시와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정보공유연대IPLeft, 「정보공
유라이선스 소개-정보공유라이선스
란」, <http://www.freelicense.or.kr>,
2007.9.3 검색.

QUIZ

정리 마당

* 원쪽의 기호와 해당 내용을 줄로 이으세요.



배너	라이선스 유형	내용
정보 유 라이선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 표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을 따른다.
기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음.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가 가능함.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수 있음.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음.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음.
	영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영리 목적의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개작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적 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이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 (예: 소설 '나비 부인'을 오페라로 만드는 것.)
	영리 금자 개작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좁음.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행위는 허용.
이용자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장폭우가 작곡한 노래를 나보아가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해도 그것이 장폭우 작곡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용할 때 꼭 누구의 저작물인지를 밝혀 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 [] •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 [] •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음.
- [] •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가능함.
- [] • 2차적 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정답은 100쪽에>



위풍당당한 하산(下山)을 위한 저작권 마법 테스트



TEST 01

1. 동화^국색 인형극의 대본

학교 방송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라는 부서별 과외 활동으로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가 있어서 방송부 친구들과 함께 인형극을 준비하기로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그런데 인형극 연습을 하던 도중 한 친구가 “우리 수업 시간에 저작권에 대해 배웠잖아? 우리가 인형극 대본으로 각색한 동화도 저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저작물이니까 공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애라네 방송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인형극 대본은 동화를 각색했기 때문에 원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 ② 반드시 동화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학생이니까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
- ③ 반드시 동화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돈도 내야 한다.
-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에게 입장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TEST 02

2. 교실에서 함께 비디오 보기

송이네 반은 사회 수업 시간에 인권에 관한 주제를 놓고 반 친구들과 함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송이는 할인 마트에서 구입한 비디오를 집에서 미리 틀어 보았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기 전 경고문을 통하여 이 비디오는 가정용으로 허락되었을 뿐, 공공 장소에서 방영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뜬다.

송이는 반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를 볼 수 있을까?

- ① 절대 안 된다.
- ②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것은 상관없다.
- ③ 대여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 ④ 비디오 제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저작권 마법 테스트



저작권 마법 테스트



TEST 03

3. 출처를 밝힌 좋은 글을 내 블로그에

지영이는 인터넷 블로그와 클럽에서 좋은 글들을 퍼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지영이의 블로그는 날로 그 인기가 많아졌는데, 어느 날 지영이 친구인 민정이가 지영이에게 “남의 글을 허락도 없이 퍼 오는 건 불법 아니니?”라고 물었다. 이에 지영이는 그 출처와 해당 사이트의 주소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 ① 해당 글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출처와 사이트의 주소를 달아 놓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지영이의 블로그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③ 블로그나 클럽에 게시한 글은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해 올린 것이므로 해당 글을 수정하여 올리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TEST 04

4.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

희영이는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모에게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미국 베스트셀러 소설을 선물 받았다. 이 소설을 너무 재미있게 읽은 희영이는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번역하여 인터넷에 올려 다른 친구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중 이 소설이 누리꾼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자 이를 출판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과연 이 소설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 출판해야 할까?

- ①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번역된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 ②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은 소설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 ③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 ④ 미국 소설의 저작권자와 무단으로 번역한 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98쪽에>





제9장

위풍당당한 하산(下山)을 위한 저작권 마법 테스트

우리의 저작권 삼총사들이 생각보다 문제를 잘 푸네요. 그동안의 수련이 과연 헛되지 않았나 봐요. 삼총사의 수련 과정을 함께 지켜본 우리 친구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한번 문제를 풀어 볼래요?

TEST 05

5. 내가 수집한 음악들

경숙이는 장래 희망이 뮤지션인 평범한 여고 2학년생이다. 평소 경숙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CD를 모두 사기엔 용돈이 부족하여 같은 반 친구인 현주를 통해 알게 된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다운 받아 듣는다.

경숙이가 P2P 서비스를 통해 음악 파일을 공유 풀더로 다운 받아 저장해 두는 일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

- 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제한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② 공유 풀더로 다운 받았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③ P2P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공유 풀더에 저장해 둔 음악 파일을 제3자가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다.

TEST 06

6. 수업 시간에 사용할 논설을 복사했어요!

고3 사회 보충 수업 시간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예상 문제를 뽑던 김 선생님은 최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를 거론한 논설을 복사하여 수업 시간에 나누어 주었다. 물론 이 문제의 저자와 인용 출처는 정확하게 밝혔다. 그런데 한 학생이 복사물을 받고 “선생님은 평소에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논설을 복사해서 나누어 줘도 되는 건가요?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였다.

이 학생의 질문에 김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 ① 선생님이라도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고 배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복제(복사),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 ③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한 행동이므로 가중 처벌된다.
- ④ 저작자에게 전화해서 허락을 받으면 된다.

TEST 07

7. 재미있는 게임을 모두에게

민수는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정품 게임 CD의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은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 CD를 구워 친한 친구 30여 명에게 나눠 주었다.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민수의 이런 행동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 ① 친구들에게 공짜로 게임 CD를 나눠 주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 ② 친구들은 모두 집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게임을 할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친한 친구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에게 게임 CD를 나눠 준 것은 개인적인 이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TEST 08

8. 우리학교 게시판을 이용했어요!

방과 후 주영이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였고, 이를 학교 친구들이 100여 회 다운로드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 경우,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할까?

- ① 상용 프로그램을 업로드 한 주영이만 책임을 지면 된다.
- ② 주영이가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였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 ③ 게시판 운영자인 학교가 이용자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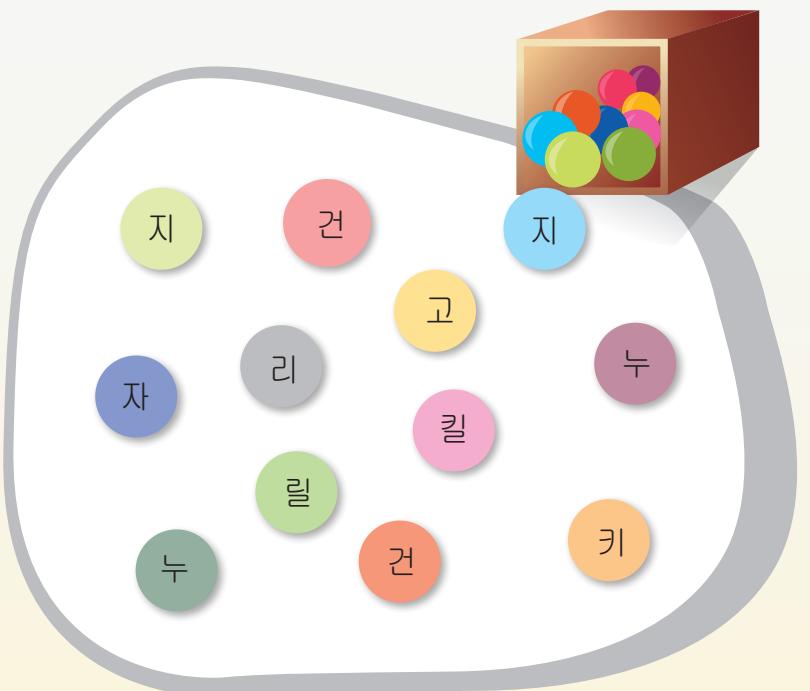
문제를 다 풀었나요? 정답이 궁금하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네요.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알았어요. 정답은 곧 공개할 거예요.

저작권 삼총사와 함께 저작권 수련을 마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산하세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저작권 도장으로 오는 일은 결코 없겠지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

<정답은 98쪽에>



* 우리의 저작권 삼총사가 서둘러 하산하다가 여러 친구에게 전해 줄 소중한 메시지가 담긴 상자를 그만 떨어뜨렸어요.
글자가 마구 뒤엉켰네요. 어떤 말이 담겨 있는지 맞춰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해요 !!



<정답은 100쪽에>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문제 풀이

제3장 보호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 QUIZ

- 1번 정답 X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해 법률, 판결, 고시, 공고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류된다.
- 2번 정답 X 인사, 왕래, 사망, 화재, 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며(저작권법 제7조), 보도 사진이나 기자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보도 기사는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 3번 정답 O 노래방에서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노래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노래방 업주는 이를 일괄하여 지급하고 있다.
- 4번 정답 O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학교의 입학 시험 등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지만, 이미 출제된 시험 문제를 수집하여 참고서를 만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문제집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번 정답 X 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 누구든지 점자로 만든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녹음 및 시각 장애인 전용 기록 방식에 의한 복제, 배포, 전송은 어문저작물에 한해 법에서 정해진 시설에서 비영리로 해야만 가능하다.
- 6번 정답 X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중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서 제공할 수 있다.
- 7번 정답 X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이용되는 서책, 음반, 영상 등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제작을 위해서는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해야 한다.
- 8번 정답 X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연, 방송할 수 있지만,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후원금을 받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9번 정답 X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였던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을 2006년 개정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규정하였다. 다만,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은 특정인의 연설을 모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였다(저작권법 제24조).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문제 풀이

제9장 하산(下山)을 위한 테스트 정답

- 1번 정답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에게 입장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비영리 공연으로써 입장료 등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할 수 있다.
- 2번 정답 2 수업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영화상영 면책
- 3번 정답 2 흔히 출처를 표시하고 해당 사이트의 주소도 달아 놓으면 허락이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이상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4번 정답 4 미국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무단으로 번역한 경우 원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결국 무단으로 번역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번역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5번 정답 3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중(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행위도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전송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저작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 6번 정답 2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책 한 권을 모두 복제해서 배포하는 것은 곤란하다.
- 7번 정답 3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이용(개인적 이용)의 범위는 대략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몇 명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30여 명이나 되는 다수의 친구에게 배포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8번 정답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므로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죄나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예: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을 하였다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

정리 마당

정답 및 설명



제1장

타	누	리	불	집	온	세	상	에	스
저	작	권	법	청	소	년	만	세	캔
작	무	단	복	제	군	시	장	상	만
물	공	부	제	2	표	호	환	구	화
지	주	적	권	처	차	마	마	경	장
마	필	상	출	관	없	적	어	재	폭
아	할	전	송	권	공	성	저	미	우
우	피	가	바	궐	미	안	수	작	등
랑	는	를	드	흥	사	심	지	직	물
저	작	권	침	해	동	그	라	미	랑

제2장

1. 저작권 2. 저작물

제3장

1. × 2. × 3. ○

제4장

1. × 2. ○ 3. ○

제5장

MP3(음악저작물), 프로그램CD(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만화책(미술저작물), 노트에 있는 캐릭터(미술저작물)

제6장

- 가. 저작권 침해!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
 다. 당신Knife?!
 라. 저작권 침해, 양심을 구기는 행위입니다

제7장

1. ○ 2. ○ 3. × 4. ○ 5. × 6. ×

MEMO!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상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정리 마당

정답 및 설명

제8장



- 영리 목적의 이용과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가장 넓음.
-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가능함.



- 2차적저작물 작성만 금지하고 나머지 저작물 이용 행위는 모두 허용.

제9장

지킬 건 지키고 누릴 건 누리자

MEMO!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삼종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MEMO!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삼종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이야기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인쇄일	2009년 12월 28일
발행일	2009년 12월 28일
발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강남우체국 6,7층) (02)2660-0000 www.copyright.or.kr
만화	임동재 [만화가·「베이비 짱」, 「울아빠 짱」 등 다수 집필]
연구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83-41 구미빌딩4층 (02)3472-0924 www.yes21.org
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4 (02)786-2999



이 책의 내용은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